

정주형

변호사시험대비 Step 2
강의계획서

교수

형사소송법

Test

진도별 모의고사 + 강의

철저한 기출분석에 근거한 출제유력쟁점 완벽정리
추가 교재 부담없이 엄선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만을 통한 수험대비
답안작성의 노하우, 선택형 지문의 해설 및 유사지문과 혼동가능한 지문 비교정리

일 정

2015. 10. 14(수) ~ 11. 3(화), 총 10 회, 월~금, 오전

시험 오전 8시~9시 30분 **강의** 오전 9시 45분~12시 45분

※ 법전협 모의시험기간(10/22~10/28) 강의없음

교 재

-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해설지에 전문항 수록) (제공)
- 선택형 핵심정리서브자료 (제공)
- 2015 최신판례자료(강의중선고된 판례까지) (제공)
-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논점 비교자료, 기록형메뉴얼자료 (제공)

수 강 특 전

- 저명교수 기록형 특강 동영상강의 제공
- 사례형 답안 강사직접 대면첨삭(일정·방법 추후공지)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문제의구성

- 사례형의 경우, 2순환 문제는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에 반영된 논점을 중심으로, 최신판례, 출제 유력 논점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도 간통죄의 소송관계, 공소시효 계산문제, 공소제기후 수사(피고인별도신문) 등 전 논점이 강사의 2순환 사례문제에서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는 강사가 각종국가시험을 비교분석하고, 최신판례 및 최신학계의 논의 등을 토대로 출제유력한 문제만을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10회의 사례형문제이면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는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다는 점만을 믿으시면 됩니다.
- 선택형의 경우 기출문제 및 법전협모의시험 문제를 철저히 반영하면서, 최신3개년판례를 위시하여 아직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문제를 전부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이 몇개의 지문 이외에는 거의 반복되는 지문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출제방식입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도 몇 해가 쌓은 만큼 이제부터는 기출의 활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모두 변형하여 출제할 예정)와 예상문제를 적절한 비율로 출제함으로써 90%이상 적중시킬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에도 2014년도 2순환에서 지문의 80%이상이 적중되었습니다. 5지선타형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사례형 선택형문제에는 부득이 형법논점도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의개요

(1)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출제유형과 대비책

-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에 대해 혹자는 판례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오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략 법조문 40%, 판례 40%, 기타사례지문 2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회 시험에서 거의 지문이 겹치지 않음으로써 기출문제 위주로 대비하여 왔던 수험생들은 선택형을 거의 맞추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형 문제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법원, 검찰, 국가직 등의 다양한 기출문제들이 조합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변호사시험의 판례와 공무원시험의 판례와 법령이 다르다는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법과 판례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것과 일반 공무원의 것, 그리고 국민의 것이 다르다면, 그 국가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독재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시험의 법과 변호사 시험의 법, 사법시험의 법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이는 기출지문을 1시간이라도 비교분석해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본 강좌에서는 2016년도 변호사시험에 출제유력한 선택형 문제를 엄선 (최신판례, 최신기출 전부반영)하여, 본 강좌의 수강만으로도 대부분의 선택형문제를 대부분 맞출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의 오랜 선택형 강의의 노하우가 담긴 핵심정리 서브노트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진도별문제와 서브노트를 합하면, 특별히 다른 교재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단시간을 투자하여 최고의 득점을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강의의개요

(2)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출제유형과 대비책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사법시험에 버금가거나 사법시험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설서들은 변호사시험의 사례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가 마치 사법시험보다 난이도가 낮은 시험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대비는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출제될 논점을 90%이상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강사는 2015년도 변호사시험의 사례형문제와 선택형문제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적중시킨바 있습니다. 본 강사는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에서 10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년간 사법시험강좌의 2순환·3순환에서 실제사법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적중시킨 경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2016년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본 강사는 금번 2순환강좌의 문제들에서 사례형의 대부분을 적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법시험문제들의 논점들은 본 모의고사에 100%반영하고 있으니, 별도로 다른 사례집 등을 참고할 필요는 없으며, 본 사례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실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순환 강좌의 강평 및 사례답안 대면첨삭의 진행

- 2순환 강좌는 강평은 사례형의 해설 및 답안작성의 노하우, 선택형지문의 해설 및 유사지문과 혼동 가능한 지문 등을 비교정리(서브자료 활용) 등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본 강사의 강평은 단지 해설서의 낭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이 사례형답안작성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안작성은 반드시 노하우가 있고,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단순히 비전문기들로부터 전문한 내용으로 대충대충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주관식은 자신의 머리속을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답안지로만 평가받게 됩니다. 좋은 답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강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하는 수강생에 한하여 별도로 대면첨삭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면첨삭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강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강의의개요

(4) 저명교수 기록형특강(동영상제공)

- 저명교수 기록형특강을 실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실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촬영해둔 내용을 신청자에 한하여 동영상으로 무료제공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분들 중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의진행도중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특강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1회 4시간분량).

(5) 수업전 준비사항

- 수업 전에는 사례형 중심의 예습을 하여야 합니다. 선택형은 별도의 예습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아래 첨부된 진도표는 사례형출제 논점위주의 진도표입니다, 선택형은 직접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문제를 풀고, 수업중의 강평을 토대로 강사가 제시한 방향과 논점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여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강의진도표	회차	일 정	시험범위 및 강평내용 / 1교시 선택, 2교시 사례설명	로스쿨 최종정리
	1	10/14(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진술거부권, 내사와 수사, 검사와 사경과의 관계,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수사조건론, 합정수사, 불심검문, 고소 및 고발, 최신판례와 최신중요논점 개관	391~405면 처음~60면
	2	10/15(목)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동의에 의한 감청, 거짓말탐지기, 사진촬영, 피의자신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참고인조사, 수사상 임의동행,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보석,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60~125면
	3	10/16(금)	구속기간, 구속영장의 효력(이중구속과 별건구속), 압수·수색·검증의 절차, 전자기록의 압수, 압수물환부청구권, 체내검사, 대물적 강제수사와 영장주의의 예외	105~108면 126~155면
	4	10/19(월)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수사종결처분, 재정신청, 공소권남용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일부주의, 소송계속,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제한,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시효	156~184면 260~296면
	5	10/20(화)	법원의 심판대상,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절차와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축소사실의 심판의무,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공판중심주의, 소송절차이분론, 피고인의 불출석, 소송지휘권, 공판준비절차, 기일전증거조사, 증거개시절차	297~332면
	6	10/21(수)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증거결정,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이익신청, 범죄피해자의 구제책, 증인신문,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재개, 국민참여재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진술의 임의성,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333~415면
	7	10/29(목)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제311조, 검사피신조서, 사경피신조서, 제312조 제4항, 제5항,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소송관계	416~438면
	8	10/30(금)	검증조서, 제313조①②,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①②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증거동의, 탄핵증거	438~462면 470~485면
	9	11/2(월)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녹화물, 전자파일,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재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 이심의 시기, 상소의 이익,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구조론, 파기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의 의의	462~470면 485~565면
	10	11/3(화)	재심제도의 개관, 경합범의 일부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형사소송법서론, 소송주체, 검사, 법원, 피고인,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제척·기피·회피, 관할, 이송, 변호인, 국선변호인소송조건론, 소송행위론	566~605면 186~258면

변사-Step 2

정주형 교수 강의계획서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강의진도표

- ※ 시험의 실전성을 감안하여, 진도 외에 출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도와 무관하게 상시출제될 수 있습니다.
- ※ 선택형문제는 수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도별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사례형문제와 동일한 순서이겠지만, 사례문제와 선택형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 및 경중이 달라서 매회차, 동일한 영역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문제는 시험의 경중에 따라 강사가 임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자료 예 시
〈예시〉 핵심지문총정리(선택형 보충자료)
1. 기피제도

- ① 기피신청시 소송절차 정지가 원칙
- ② 본안소송만 정지(判), 구속기간의 갱신이나 판결선고는 정지되지 않음(갱판)
 - ☞ 그 결과 변론이 종결된 이후 기피신청을 한 경우 판결선고는 가능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신청은 목적의 소멸로 부적법해짐
 - ☞ 기피신청이 있음에도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기간 동안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 설령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判).
- ③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음(예 구속기간 만료임박(13일전/24일전))
- ④ 당해법원, 법관이 간이기각결정시에도 정지되지 않음
- ⑤ 기피가능성을 시사한 예외적 사례
 - ㉠ 법관이 심히 모욕적 언사 또는 유죄예단의 발언을 한 경우
 - ㉡ 증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경우
 - ㉢ 증거취소결정이 실제진실발견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

2. 필요적 변호사건

- ① 국선변호인
 - ㉠ 필요국선(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미성년자, 70세이상 구속된 때, 단기3년이상 농심미치구쌍)
 - ㉡ 청구국선(피고인 빈곤, 청빈)
 - ㉢ 재량국선(법원이 여러 사정 참작, 명시 의사 반할 수 없음, 재명)
- ② 필요적 변호사건 : 필요국선 청구 또는 재량으로 일단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없이 개정된 기일의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
- ⑤ ④의 경우 무효이나, 무죄를 선고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아님
- ⑥ 제심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변호인없이 공판기일 진행시, 항소심은 다시 증거조사하여 스스로 파기하여 판결하여야 한다(파기 재판).
- ⑦ 청구국선의 경우, 청구시 법원은 (설령 기각하더라도) 반드시 결정의무 있다.
- ⑧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은 판결전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 불가능하고, 재항고도 불가능하다(判).
- ⑨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변호인이 무단퇴장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증거동의 의제됨
 - ☞ 다만, 통설은 심리·판결불가능하고, 증거동의 의제 안된다고 봄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자료 예 시

3. 이의신청

- ①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 법원은 결정의무 없음. 재판장의 의견 기재한 조서 첨부해야
- ②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제304조①)
 - ⇒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제기가능(규칙 제136조)
 - ⇒ 법원은 즉시 결정의무 있음. 법원의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 불가. 다만, 판결전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법을 상대적 상소이유로 제시 가능
-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①)
 - ⇒ 법령위반 또는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조상, 규칙 제135조의2 본문)
 - ⇒ 법원은 즉시 결정의무 있음. 보통항고불가, 다만, 상소이유로 제시 가능
- ④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①)
 - ⇒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가능(규칙 제135조의2 단서)
 - ⇒ 법원은 즉시 결정의무 있음. 보통항고불가. 다만, 상소이유로 제시 가능

4.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의미

-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은 형식적 진정성립을 넘어 조서작성방식과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하는 개념
 - ※ 제312조의 “적” 요건은 법률적 차원의 절차위반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항 위반인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하였다는 의미와는 구별됨
- ②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 ③ 형사소송법의 조서작성방식 중 진술자의 본명기재를 강제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가명(假名)의 진술조서라도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가능.
-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것은 ㉠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님과 동시에 ㉡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함(위수증이라는 의미)
- 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제244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확인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 제308조의2 위반은 아니나, ㉡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음(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됨).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Test

자료 예시

5.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 ①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2조③).
- ② 제312조 제3항은 사경작성 피신조서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도 적용된다(判)
 - 주 甲피고사건에서 사경작성 공범 乙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 적+당해피고인 甲의 내용인정 (제312조③)
- ③ 사경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 甲피고사건에서 사경작성 공범乙에 대한 피신조서가 제출되었는데, 乙이 공판정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 판례는 甲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본다.
- ④ <비교>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
 - ⇒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乙)이 불출석한 경우, 제314조가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